#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2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 박지혜·위성곤·이개호

조인철 · 강준현 · 정일영

정진욱 · 오세희 · 박수현

허 영·김용만·이재관

이용우 · 문대림 · 황명선

이재강 • 이광희 • 박선원

박희승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 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 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가
	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
	<u>여를 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간병에 대한 보험급
	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
	<u>우</u>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